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후탄소정책실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으로 「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2. 1. 00. 개정·공포)됨에 따라,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생략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. 00. ~ 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환경부령 제 호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8]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(제39조제1항 관련)

1. 환경부

평가대상 조직

조 직	정 원	평가기간
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	1명 (5급 1명)	2023년 9월 30일까지

2. 환경부 소속기관

평가대상 정원

업 무	정 원	평가기간
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(유역 · 지방환경청)	47명 (5급 1명, 6급 12명, 7급 17명, 연구관 1명, 연구사 16명)	2022년 12월 31일까지